

의안번호	2212876
의 퇴 인	서영교의원
회 답 일	2025.11.7.
추계번호	25G50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에 대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286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4,351억원(연평균 △8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소득세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합계	-286	-1,118	-1,049	-979	-919	-4,351	-870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안 제12조제3호머목)	-286	-280	-274	-269	-263	-1,372	-274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안 제59조의4제3항)	-	-838	-775	-710	-656	-2,979	-745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 근로자의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u>월 20만원</u> 이내의 급여 - (개정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u>자녀 1명당 월 20만원</u> 이내의 급여						
2	안 제59조의4제3항 (특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상향 및 초등생 사교육비 공제 신설 - (현행)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무제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교육비 지출 - (개정안)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u>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u> 등 근로소득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u>소득 무제한</u>)에 대한 교육비 지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현행</th><th>개정안</th></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 대상범위</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무제한. <u>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u>)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td><td>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u>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u>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u>소득 무제한</u>)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td></tr> </tbody> </table>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범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무제한. <u>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u>)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u>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u>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u>소득 무제한</u>)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구분	현행	개정안						
세액공제 대상범위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무제한. <u>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u>)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취학전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 등 <u>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대한 예능학원 또는 체육시설 교육비</u> 등 근로소득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나이· <u>소득 무제한</u>)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2조제3호머목 (비과세소득)	○	
2	안 제59조의4제3항 (특별세액공제)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며, 부칙에 의해 동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서 동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은 동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
 - 이에 따라 동법은 2025년 중 통과되며 2026.1.1.부터 공포 및 시행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라 1인당 보육수당액은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녀 1명 월 20만원 동일, 자녀 2명 월 20만원 → 월 40만원으로 2배 증가 가정, 자녀 3명 월 20만원 → 월 60만원으로 3배 증가 가정) 만큼 증가 전제
 - 비과세 한도 상향시 기존 보육수당 지급 사용자는 개정된 한도 상향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
 - 2024년부터 1인당 출산·보육수당 한도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기준 1인당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금액을 추정, 향후 5년간 동 수준을 유지한다고 전제
 - 2024년 귀속분부터 출산·보육수당 자료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조정
 - 2025년 귀속분부터는 출산수당과 보육수당을 분리하여 출산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폐지(월 20만원 → 전액)하되, 보육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으로 동일
 - 영유아 자녀 수별 가구 수가 영유아 자녀 1명/ 2명/ 3명이상으로 구분됨에 따라, 영유아 자녀 3명 이상인 경우는 영유아 자녀가 3명이라고 가정하여 추계
- 비과세 대상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출산·보육수당 신청인원 중 자녀 수별 비율은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영유아 수별 가구 수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
 - 2023년 기준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수는 총 135.6만가구이며, 이 중 영유아자녀가 1명인 가구는 69.1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51.0%), 2명인 가구는 54.3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40.0%), 3명 이상인 가구는 12.2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9.0%)임
-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 개정안의 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관련 세수효과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함
 - 개정안이 2025년 중 의결될 경우 2026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적용이 되어 2027년 연말정산부터 감면효과가 발생(징수 기준)
 - 부칙에 따르면 개정안은 2026년부터 시행
- 개정안의 내용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세수변화는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 동 세수변화 추계를 위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가구에서 기본공제대상자별 소득금액, 교육비 지출금액 등에 대한 상세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동 통계자료가 집계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려움
- 세액공제 제도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영유아 자녀 수별 가구 수)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유아 자녀 가구*수는 135.6만가구이며, 영유아 자녀 수별로 가구수 구분 가능
 - *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023년 영유아 자녀 가구 중 영유아 자녀가 1명인 가구는 69.1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51.0%), 2명인 가구는 54.3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40.0%), 3명 이상인 가구는 12.2만가구(전체 가구수 대비 9.0%)임
 - 동 비중을 전체 비과세 보육수당 지급 인원에 적용하여 영유아 자녀 수별 가구 수를 추정하였으며, 이의 총급여 규모별 분포는 국세통계연보의 비과세 보육수당 분포를 따른다고 전제

[표 2] 영유아 자녀 수별 가구 수

(단위: 만가구, %)

		영유아 자녀 합계	영유아 자녀 1명	영유아 자녀 2명	영유아 자녀 3명 이상
가구수	2021	156.6	75.0	66.0	15.6
	2022	144.9	71.4	59.7	13.8
	2023	135.6	69.1	54.3	12.2
비중	2021	100.0	47.9	42.2	10.0
	2022	100.0	49.3	41.2	9.5
	2023	100.0	51.0	40.0	9.0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결과,
2023년 자료 기준으로 약 307.0억원의 근로소득세수 감소가 예상
- 국세청의 현행 출산·보육수당 비과세액('23년 귀속소득 기준)에 대한 총급여 구간별 자료를 기준으로 2024년부터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 증가(2배)를 반영한 후, 1인당 보육수당이 개정안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자녀 2명인 경우 2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배 증가 가정)로 증가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 추계

[표 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근로소득세, 2023년(귀속연도) 기준

총급여 규모	공제 인원, 명				1인당 평균 비과세액, 백만원					실효세율 ⁵⁾ (E) %	1인당 세수감소효과 (F=D×E), 백만원		총 세수감소효과 (G=A×F) 억원		
					현행 ³⁾	개정안 :자녀 2명인 경우		개정안 :자녀 3명 이상인 경우 ⁴⁾			자녀2명 (F1= D1×E)	자녀3명 이상 (F2= D2×E)	자녀2명 (G1= A1×F1)	자녀3명 이상 (G2= A2×F2)	합계 (G= G1+G2)
	합계 ¹⁾ (A=A1+A2 +A3)	자녀 1명 ²⁾ (A1)	자녀 2명 ²⁾ (A2)	자녀 3명 이상 ²⁾ (A3)		현행 (B)	개정안 (C1)	차이 (D1=C1－ B)	개정안 (C2)						
전체	376,645	191,962	150,822	33,860	1.52	3.04	1.52	4.57	3.04	12.28	0.19	0.37	211.8	95.1	307.0
1천만 이하	－	－	－	－	－	－	－	－	－	－	0.00	0.00	0.0	0.0	0.0
1.5천만 이하	295	150	118	27	0.75	1.49	0.75	2.24	1.49	0.21	0.00	0.00	0.0	0.0	0.0
2천만 이하	2,106	1,073	843	189	0.97	1.93	0.97	2.90	1.93	0.90	0.01	0.02	0.1	0.0	0.1
3천만 이하	11,782	6,005	4,718	1,059	1.33	2.65	1.33	3.98	2.65	1.60	0.02	0.04	1.0	0.4	1.5
4천만 이하	23,385	11,918	9,364	2,102	1.38	2.76	1.38	4.15	2.76	3.06	0.04	0.08	4.0	1.8	5.7
4.5천만 이하	19,893	10,139	7,966	1,788	1.40	2.80	1.40	4.19	2.80	4.62	0.06	0.13	5.1	2.3	7.5
5천만 이하	28,219	14,382	11,300	2,537	1.39	2.77	1.39	4.16	2.77	5.59	0.08	0.16	8.8	3.9	12.7
6천만 이하	78,600	40,060	31,474	7,066	1.42	2.84	1.42	4.26	2.84	6.84	0.10	0.19	30.6	13.7	44.3
8천만 이하	122,743	62,558	49,151	11,035	1.54	3.09	1.54	4.63	3.09	8.78	0.14	0.27	66.7	29.9	96.6
1억 이하	44,667	22,765	17,886	4,016	1.66	3.31	1.66	4.97	3.31	11.60	0.19	0.38	34.4	15.4	49.8
2억 이하	40,476	20,629	16,208	3,639	1.79	3.59	1.79	5.38	3.59	17.76	0.32	0.64	51.6	23.2	74.8
3억 이하	3,043	1,551	1,219	274	1.79	3.58	1.79	5.37	3.58	26.69	0.48	0.96	5.8	2.6	8.4
5억 이하	1,046	533	419	94	2.00	4.00	2.00	6.00	4.00	30.94	0.62	1.24	2.6	1.2	3.8
10억 이하	304	155	122	27	2.07	4.14	2.07	6.22	4.14	34.55	0.72	1.43	0.9	0.4	1.3
10억 초과	86	44	34	8	2.23	4.47	2.23	6.70	4.47	40.06	0.89	1.79	0.3	0.1	0.4

주: 1) 국세통계연보 비과세 신청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 2023년 귀속기준

2) 자녀수별 인원수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영유아 자녀수별 가구수 비중을 활용하여 추정

3) 2023년 귀속 1인당 출산·보육수당액이 2024년 귀속분부터 시행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월10만원 → 월 20만원)에 따라 2배 증가한다고 가정

4)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녀가 3명인 경우로 가정하여 추계

5)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 비율

□ (향후 5년간 대상 인원수 추정) 향후 5년간 대상 보육수당 비과세 신청 인원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22년 기준)자료의 증가율을 활용해 추정

- 2023년 기준 자녀수별 보육수당 비과세 신청 인원 추정치에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중 미혼자녀 있는 가구(가구주 연령 30세 이상 60세 미만)의 향후 증가율을 적용하여 추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을 별도로 발표하지 않아, 가구주 연령을 30세 이상 60세 이하로 제한한 후, 해당 가구의 향후 증가율을 사용
 - 근로소득세 신고자의 2023년 귀속기준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출산·보육수당 신청 인원 대비 신청자의 연령이 30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의 비중은 각각 98.2%에 달함
- 향후 5년간 총급여구간별 인원 비중은 2023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표 4]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미혼자녀가 있는 가구 전망, 2023~2029

(단위: 만가구)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미혼자녀 있는 가구 (가구주 연령 30세 ~60세)	631.8 (-2.8)	617.9 (-2.2)	604.7 (-2.1)	592.3 (-2.1)	580.6 (-2.0)	570.0 (-1.8)	557.2 (-2.3)

주: 1. ()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미혼자녀 있는 가구는 부부+미혼자녀, 부+미혼자녀, 모+미혼자녀, 부부+미혼자녀+부(모)의 합계
자료: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전국편, 2024.9

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1) 조세지출 실적

- 2023년 교육세 특별세액공제 규모는 적용인원 274.4만명, 공제세액 8,512억원으로 최근 3년간(2020~2023년) 적용인원(7.6% ↑) 및 공제세액(1.3% ↑) 증가 추세

[표 5]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규모 추이(귀속년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¹⁾
적용인원	2,747	2,203	2,241	2,575	2,744	2,441
(증가율)	(4.5)	(△19.8)	(1.7)	(14.9)	(6.6)	(7.6)
공제세액	10,704	8,194	8,345	8,350	8,512	8,350
(증가율)	(△2.5)	(△23.4)	(1.8)	(0.1)	(13.6)	(1.3)

주: 1. 결정세액 있는 자 기준

1) 2020~2023년 평균

자료: 각 연도 「국세통계연보」(국세청)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추계 방법

-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국세통계연보」 및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활용한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해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재정패널조사」(제16차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년 귀속소득) 상의 가구별 소득, 교육비 지출 등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교육비 세액공제 제도변경 상황에 대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2022년 기준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을 추정함
 - 교육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따른 세부 공제내역이 현재 국세청에서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¹⁾
 - 「재정패널조사」에는 조사되지 않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별 가계의 교육비 지출 내역은 「초중고사교육비조사」(통계청·교육부)의 소득별 및 학교급별 사교육비 자료를 활용함²⁾

1) 「국세통계연보」(국세청) 상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는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공제사항을 모두 포함함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2022년 기준 「재정패널조사」의 미시모의실험분석을 통한 추정치에 대해 「국세통계연보」(국세청)의 관련 실적치와의 관계를 반영하여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함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해당 공제를 신청한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게 적용되나, 「재정패널조사」의 가구별 미시자료에는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및 결정세액 여부에 대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 및 금액에 대한 「재정패널조사」 추정치는 「국세통계연보」 실적치보다 과대추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동 연보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치 대비 실적치 비율(이하 '조정비율') 등을 적용하여 2022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 후 2023년 기준으로 환산
- 2023년 기준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바탕으로 이후 2027년부터 5년 동안의 추계기간의 세수효과에 대해 분석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만 7~12세 인구(초등생)의 연도별 증감률³⁾을 적용함

2)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서 전체 사교육비 지출액 대비 학교급별 학원비 지출액 비중을 반영함

3) ('26년) -5.7%, ('27년) -6.0%, ('28년) -7.6%, ('29년) -8.3%, ('30년) -7.5%

(3) 추계 결과

□ (조정비율)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현행 제도 하의 「재정패널조사」 추정치에 대한 「국세통계연보」 실적치의 비율은 대상인원 전체는 0.82, 대상금액 전체는 0.53으로 계산됨

[표 6] 현행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관련 대상 인원·금액의 추정치 및 실적치 비교: 2022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과세대상 총급여 구간	추정치(재정패널조사)			실적치(국세통계연보) ¹⁾			조정비율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A	B	C=B×0.15	D	E	F=E×0.15	G=D/A	H=E/B
전체	3,136	104,835	15,725	2,575	55,668	8,350	0.82	0.53
1천만 이하	46	744	112	—	—	—	—	—
1.5천만 이하	69	2,463	369	0	0	0	0.00	0.00
2천만 이하	78	1,527	229	1	6	1	0.02	0.00
3천만 이하	270	9,252	1,388	53	285	43	0.20	0.03
4천만 이하	332	10,546	1,582	148	1,389	208	0.45	0.13
4.5천만 이하	168	4,933	740	128	1,669	250	0.76	0.34
5천만 이하	165	5,044	757	157	2,307	346	0.95	0.46
6천만 이하	362	10,531	1,580	356	5,827	874	0.98	0.55
8천만 이하	608	18,532	2,780	663	12,545	1,882	1.09	0.68
1억 이하	460	16,354	2,453	451	11,838	1,776	0.98	0.72
2억 이하	530	22,932	3,440	543	16,744	2,512	1.02	0.73
3억 이하	31	1,379	207	49	2,002	300	1.59	1.45
5억 이하	9	430	65	16	711	107	1.84	1.65
10억 이하 ²⁾	6	133	20	6	268	40	1.00	2.01
10억 초과 ²⁾	1	35	5	1	77	12	1.00	2.20

주: 1) 실적치는 「국세통계연보」 상의 결정세액 있는 자의 자료임

2) 과세대상 총급여 5억원 초과와 경우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3억 초과 5억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조정비율을 계산함

자료: 「재정패널조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차년도, 2024년) 및 「국세통계연보」(국세청, 2023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3년 기준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에 대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규모는 9,539억원이며 이에 따라 조세지출액이 현행(8,512억원) 대비 1,027억원 증가하여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주: 1) 과세대상 총급여 10억원 초과 구간은 「재정패널조사」 자료가 없는 관계로 5억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과 자녀당 교육비 지출수준 등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함

2) 개정안에 따른 모든 총급여 구간별 1인당 세수효과는 근로소득자의 1인당 결정세액[「국세통계연보」

[표 7]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개정안 세수효과 추계: 2023년 기준

(단위: 천명, 억원)

총급여 구간	현행 (국세통계연보 실적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현행 대비 세수효과 ²⁾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대상인원	대상금액	공제세액	
	D	E	F	L	M	N=M×0.15	
전체	2,744	56,747	8,512	3,309	63,595	9,539	-1,027
1천만 이하	-	-	-	-	-	-	-
1.5천만 이하	0	0	0	0	0	0	-0
2천만 이하	2	7	1	2	8	1	-0
3천만 이하	57	262	39	71	288	43	-4
4천만 이하	145	1,122	168	171	1,215	182	-14
4.5천만 이하	120	1,372	206	137	1,506	226	-20
5천만 이하	153	2,045	307	175	2,241	336	-29
6천만 이하	362	5,532	830	440	6,313	947	-117
8천만 이하	706	12,731	1,910	902	14,773	2,216	-306
1억 이하	508	12,487	1,873	608	13,989	2,098	-225
2억 이하	612	18,049	2,707	716	19,951	2,993	-285
3억 이하	53	2,045	307	63	2,219	333	-26
5억 이하	18	758	114	18	758	114	-
10억 이하	6	267	40	6	267	40	-
10억 초과 ¹⁾	1	68	10	1	68	10	-

4-2-4.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IV(과세대상근로소득)]보다 작게 나타나므로 개정안에 따른 공제 세액 모두를 세수효과가 되는 것으로 함

4. 세수효과 요약

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285.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372.4억원(연평균 △27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8]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285.7	-279.8	-274.3	-269.3	-263.2	-1,372.4	-274.5

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에 대한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지출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할 경우, 2027년 838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3,590억원(연평균 718억원)으로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요건 폐지는 객관적인 추계가 곤란하여 추계대상에서 제외

[표 9]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안 제59조의4제3항)	-838	-775	-710	-656	-611	-3,590	-718

※ 본 추계 결과는 미시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추계한 결과로서 가계별 지출상황에 따라 실제 세수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